

1. 개정이유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바이오 산업 진흥과 연계되는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 공보에 부분주소가 게재되도록 하는 선택 방식을 확대하고,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접근코드 제출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 효율화(안 제23조, 별지서식 제14호, 제19호)

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 미생물 기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미생물기탁 출원절차와 분양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1조, 제29조의2, 제38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별지서식 제14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 후에도 소 제기 전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원인의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특허출원·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안 제55조의2, 별지서식 제10호)
절차의 무효, 특허료 미납부로 인한 권리 소멸 시 그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특허출원인 등을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신청 방법 확대(안 별지서식 제4호)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출원 관련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보에 부분주소를 표시하는 제도에 있어 기존 공보 발행 이후에 부분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더하여 공보 발행 전에 부분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명세서 등에 입력 가능한 문자의 확대(안 별지서식 제15호, 제16호, 제43호 내지 제45호, 제53호, 제55호)

특수문자를 포함한 많은 문자의 표현이 가능한 유니코드 형식으로 명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서식에 안내하여 출원인이 발명을 보다 자유롭고 정확한 표현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바. 서류제출서를 통한 우선권 증명서류 접근코드 제출 명확화(안 별지서식 제13호)

우선권 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를 통해 전산으로 입수하기 위해 접근코드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실무와 서식 안내상 차이가 있어 출원인 혼란이 발생하는 바, 우선권 증명서류나 접근코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도록 서식 안내를 명확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단서**”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출원으로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거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경우

22.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출원을 기초로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하는 경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증명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분리출원)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제2항 중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분리출원”으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제1호 중 “변경출원”을 “변경출원, 분리출원”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책임질 수 없는”을 “정당한”으로 한다.

제8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5호바목에 “D28.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상표등록출원으로서의 변경출원”을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제63조제3항”을 “제63조제2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5호라목 중 “경과이유”를 “경과이유 또는 정당한 결과이유”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간 경과 구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자가 그 기간 경과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법」 제7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19조 「상표법」 제19조
	본인이 정당한 사유로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자가 그 기간 경과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법」 제16조제2항·제67조의3,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18조제2항 「상표법」 제18조제2항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5호가목 중 “【취하(포기)대상】”을 “【취하(포기)대상】 , 【취하(포기)사유】”로 하고, 예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예 4] 【취하(포기)내용】

【취하(포기)대상】 출원의 취하

【취하(포기)사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권리획득 불필요 거절이유 수용 기타

【접수번호】 1-1-2014-1234567-12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6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접근코드】 란을 기재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1) 중 “한국 산업 규격 KS X 1001”을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로 하고, 같은 호나목(4) 중 “3mm ×”를 “4mm ×”로, “3mm(10포인트)”를 “4mm(12포인트)”로 하며, 같은 호다목(2) 중 “한국 산업 규격 KS X 1001”을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를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8호가목 중 “다음과 같습니다.”를 “기재요령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목1) 및 2)를 삭제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생물분양자격증명의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이유를 적습니다.

[예 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특허 공개번호

10-2021-1234567 또는 특허등록번호 10-1234567)

[예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특허 출원번호 10-2021-1234567)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나목(1)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를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로 하고, 같은 호다목(4) 중 “3mm ×”를 “4mm ×”로, “3mm(10포인트)”를 “4mm(12포인트)”로 하며, 같은 호라목(2)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를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나목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를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로 하고, 같은 호다목(4) 중 “3mm ×”를 “4mm ×”로, “3mm(10포인트)”를 “4mm(12포인트)”로 하며, 같은 호라목(2)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를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나목(4) 중 “3mm×세로 3mm(10포인트)”를 “4mm×세로 4mm(12포인트)”로 하고, 같은 호다목(2)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를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1)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를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로 하고, 같은 호나목(4) 중 “3mm ×”
를 “4mm ×”로, “3mm”를 “4mm”로 하며, 같은 호다목(2) 중 “「전기통신기본
법」 제29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를 “국제
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9
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를 “국제적인 문자
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앞쪽)

【제출인】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제출인 구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제출인 인감(서명)】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그 밖의 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공보에 제출인의 주소가 일부(시·군·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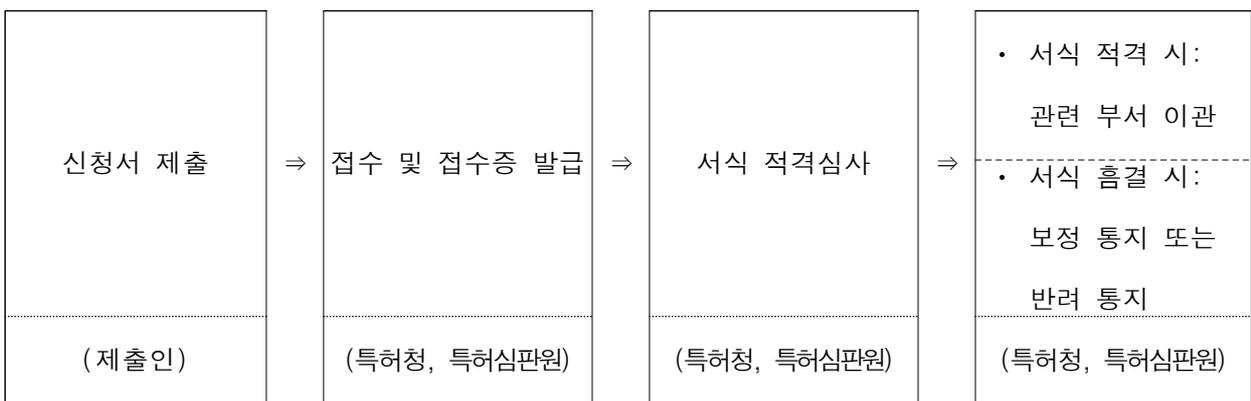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 가. 이 서식은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고 특허청 고유번호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9조 및 「상표법」 제29조).
 - 나. 한편,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8조의4,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및 「상표법」 제31조).
 - 다.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 서식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 라.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 서식으로 공보의 주소를 일부(시·군·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
 - 라마. 특허청은 본 신청서에 적힌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발명·고안 등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1조, 「실용신안법」 제1조, 「디자인보호법」 제1조, 「상표법」 제1조).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릅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 1) 제출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의 국문표기】란에 성과 이름 순서로 공백 없이 적으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

니다. 제출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국문표기】** 및 **【명칭의 영문표기】** 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적습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2) 제출인이 외국인(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성명의 국문표기】** 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성명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되,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 공백을 두며, **【성명의 영문표기】** 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명칭의 국문표기】** 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명칭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고 **【명칭의 영문표기】** 란은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예 1] 외국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예 2]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명칭의 국문표기】 에이에스디 코퍼레이션

【명칭의 영문표기】 ASD corporation

나. **【제출인 구분】**

“국내 자연인”, “외국 자연인”, “국내 법인”, “외국 법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 **【주민등록번호】**

제출인 구분에 따라 다음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한편, 이 난을 삭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제출인이 국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제출인이 국내 주소가 있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란으로 바꾸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란을 추가하고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으로 바꾸고 국내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5) 제출인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립·공립학교,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으로 바꾸고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6) 제출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으로 바꾸고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적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면 마감기한, 방식처리 결과, 통지서 발송내용, 공시송달사항 및 서류 제출결과 등에 대한 통지, 만족도 조사 및 정책안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마. 【우편번호】 및 【주소】

- 1)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 【우편번호】 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소】 란에 적고, 다음 행에 【주소의 영문표기】 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 2) 【주소】 란에 적은 주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주소】 란의 다음 행에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송달장소의 주소】 란을 만들어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송달장소의 주소는 국내 주소만 적을 수 있으며, 【주소】 란의 주소와 송달장소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000-000

【송달장소의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 3)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소】 란의 다음 행에 【국적】 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어야 합니다.

바. 【전자우편주소】

제출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를 적으면 마감기한, 방식처리 결과, 통지서 발송내용, 공시송달사항 및 서류 제출결과 등에 대한 통지, 만족도 조사 및 정책안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출원인의 동의(전자문서 이용 시에는 온라인상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습니다)를 받아 마감기한에 대한 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 【제출인 인감(서명)】

- 1) 인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 란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고, 서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서명】**란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서명 날인란을 만들어 선명하게 서명합니다. 인감과 서명을 같이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 및 서명】**란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 및 서명 날인란을 각각 만들어 선명하게 날인 및 서명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서명)】**란을 삭제합니다.

2)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제출인 인감(서명)】**란과 같은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며,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에 **【특허고객번호】**를 적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인 인감(서명)】**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컬러 이미지로서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1)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법정대리인이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란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출원건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건이 없거나 계류 중인 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예]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10-1998-1234567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어 이를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그 밖의 사항】란

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과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또는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를 자동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 안에 표시(예:)합니다. 그 밖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또는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십시오.

[예] 【그 밖의 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나.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과 함께 공보의 국내 주소를 일부(시·군·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 안에 표시(예:)합니다.

[예] 【그 밖의 사항】 공보에 제출인의 주소가 일부(시·군·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

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인 구분에 따른 다음 항목의 증명서류 1통(기재요령 제1호 참조)

가) 국내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통

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1통

※ 외국 자연인 중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증명 1통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라)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통

※ 외국 법인 중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증명(또는 고유번호증)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국가기관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중 1통

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1호 및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

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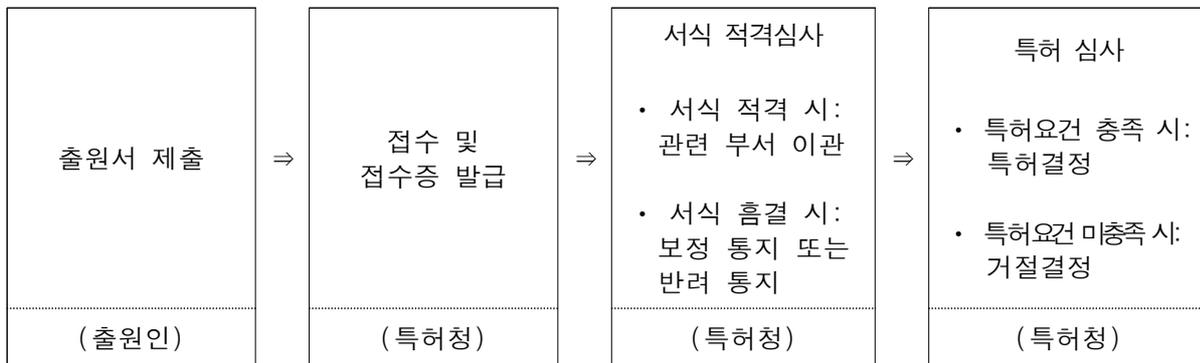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1. 출원 구분 및 관련 규정

출원 구분	내용	관련 규정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
분할출원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2조
변경출원	먼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법」 제53조
분리출원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먼저 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거절결정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법」 제52조의2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특허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특허법」 제34조, 제35조

2. 처리절차



※ 참고사항

가. 특허 심사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심사청구는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나. 특허 심사 결과,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법」에서 정하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인에게 특허결정서를 송부하며,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재요령

1. 【출원 구분】란

출원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출원 구분】란의 다음 행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참조번호】 1

3.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공통

(1)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명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 「특허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에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발명의 국문명칭】 및 【발명의 영문명칭】란

【발명의 국문명칭】란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란에 적은 국문명칭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발명의 영문명칭】란에는 발명의 국문명칭과 동일한 내용이 되도록 영문명칭을 적습니다.

6. 【발명자】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에 적은 국문성명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발명자】란에 발명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발명자】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발명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은 기재할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적습니다.

7. 【출원언어】란

가. 특허출원에 사용하려는 언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1)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로 작성하는 경우 국어의 안에 표시합니다.

(2)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 외의 언어로 적으려는 경우(외국어특허출원)에는 영어의 안에 표시합니다.

※ 외국어특허출원 관련 규정: 「특허법」 제42조의3,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8.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란

가.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이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9. 【우선권주장】란

가.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55조에 따른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위 우선권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먼저 적습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적지 않으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1234567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접근코드】 8654321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18-1234
 【출원일자】 2007. 1. 1.
 【증명서류】 첨부
 【접근코드】 9876543

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증명서류】 및 【접근코드】란을 각각 적습니다. 【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으며, 【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적고, 그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고, 【접근코드】란에 해당 접근코드를 적습니다.

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란의 다음 행에 선출원의 【출원국명】 , 【출원번호】 , 【출원일자】 및 【증명서류】란을 각각 적습니다. 【출원국명】란에는 “KR” 이라고 적고, 【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10. 【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안에 모두 표시(예:)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 규정
심사청구	출원과 동시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
심사유예신청	심사청구의 <input type="checkbox"/>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심사유예신청도 동시에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단서
조기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다만,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함)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지예외적용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예외적용대상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의 발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미생물기탁	특허출원된 발명과 관련한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서열목록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출원인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6항
국방관련 비밀출원	출원인이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국방관련 출원이라고 판단한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11조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 방법을 따르지 않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것으로 간주)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및 제6항

나. 심사유예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하면 일반출원보다 늦게 심사를 받는 대신 정확한 시점(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면 유예희망시점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료의 납부만 유예되고 출원료 등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한편, 유예희망시점이 출원일부터 5년(60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1) 심사청구료 납부의 유예 없이 심사유예신청만 하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심사청구 사항 및 심사유예신청 사항의 안에 모두 표시(예:)한 후, 【기타 사항】란의 다음 행에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개월)란을 만들어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고,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란을 만들어 불필요에 표시(예:)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하지 않음)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2) 심사유예신청을 하면서 심사청구료 납부도 유예하려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심사청구 사항 및 심사유예신청 사항의 안에 모두 표시(예:)한 후, 【기타 사항】란의 다음 행에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개월)란을 만들어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고,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란을 만들어 필요에 표시(예:)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희망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 유예)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주의사항

- (1) 심사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만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료 등과 심사청구료가 각각 납부될 수 있도록 출원서에 대한 접수번호(심사청구 미포함) 외에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고 이후 특허청에 대한 모든 절차(특허청 내 전산자료 관리, 제 증명 발급 등)에서 출원서와 심사청구서가 각각 제출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란을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납부되므로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 (3) 심사청구료 납부가 유예된 것일 뿐 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은 아니므로 심사청구료가 납부될 때까지 이후 제출되는 일부 서류(청구항 수를 증가하는 보정서 등)의 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공지에외적용

공지에외적용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란의 다음 행에 【공지에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 란을 각각 만들어 공지 등의 예외적용대상임을 인정받으려는 발명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적습니다. 또한, 【첨부서류】 란에는 공지에외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공지에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공개일자】

라. 미생물기탁

(1) 2009년 12월 31일 전에 출원된 출원건인 경우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란의 다음 행에 【미생물기탁】 , 【기탁기관명】 , 【수탁번호】 및 【수탁일자】 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적으며, 2 이상의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니다. 또한, 【첨부서류】 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KCTC-0000P

—【수탁일자】—2007. 1. 1.

—【미생물 기탁】—

—【기탁기관명】—생명공학연구소(KRIBB)

—【수탁번호】—KCTC-0000BP

—【수탁일자】—2007. 1. 1.

(2)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인 경우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 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명세서에 미생물명을 적을 때에는 해당 수탁번호도 함께 적으며, 수탁번호를 정리하여 별도로 적으려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탁번호】 란을 만들어 해당

수탁번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인 경우

미생물기탁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미생물기탁】 , 【기탁기관명】 , 【수탁번호】 및 【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미생물명을 적을 때에는 해당 수탁번호도 함께 적으며, 수탁번호를 정리하여 별도로 적으려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탁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수탁번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생명공학연구소(KRIIBB)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15. 10. 14.

마. 서열목록

(1) 서열목록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 【서열개수】 및 【서열목록전자파일】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서열개수】란에는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고, 【서열목록전자파일】란에는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합니다) 제출여부를 “첨부” 또는 “미첨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 1부(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과 동일함)”라고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서열목록전자파일】 첨부

바. 기술이전희망

기술이전희망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기술이전희망】 , 【기술이전대가】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기술이전 형태 및 대가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니다. 기술이전을 희망한 특허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에 기술이전희망 기술로 등록됩니다.

[예] 【기술이전희망】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예] 【기술이전대가】 유상 무상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 【과제관리(전문)기관명】 , 【연구사업명】 , 【연구과제명】 , 【기여율】 , 【과제수행기관명】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과제고유번호】란은 국

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란은 과제 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적습니다. 【과제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기여율】란은 이 발명을 지원한 과제가 1개인 경우에는 1/1로 적고,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별 기여율을 ○/□과 같이 분수로 적되, 총합이 1이 되도록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해당 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농촌진흥청

【과제관리(전문)기관명】 농촌진흥청

【연구사업명】 바이오장기생산기술개발

【연구과제명】 형질전환 복제무균돼지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술개발

【기여율】 1/2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18. 4. 1. ~ 2019. 3. 31.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당단백질과 당지질말단당쇄변화에 기초한 간암 바이오마커의 발굴을 통한 임상적용연구

【기여율】 1/2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대학교

【연구기간】 2018. 2. 1. ~ 2019. 1. 31.

아. 국방관련 비밀출원

(1) 국방관련 비밀출원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국방관련 비밀출원】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국방관련 비밀출원】란은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기타사항】

【국방관련 비밀출원】 비밀분류기준에 해당

자.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을 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시 명세서 제출 시 주의사항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법」 제42조의 2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

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명세서·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1.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적습니다. 【출원료】란에는 출원서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 및 특허출원료 금액을 적습니다. 특허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전체 면수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특허출원료에 적습니다.

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다만,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합니다)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료】란의 다음 행에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및 【합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우선권주장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적고, 【심사청구료】란에 심사청구 시의 청구항의 수 및 심사청구료를 적으며, 【합계】란에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합계】란의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우선권주장료】

【심사청구료】

【합계】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

라.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1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3. 【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이면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 (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을 제출할 시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 별지 제1

6호서식(요약서) 및 별지 제17호서식(도면)을 준용하고, 그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4.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서

PCT 용도

(앞쪽)

【국제 출원번호】

【제출구분】 국제 조사용번역문 서류원본 기간 미준수 증거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선출원번역문 서열목록 등 서열목록보정

【제출기관】 수리관청 국제 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번호】

(【제출(보정)요구일자】)

(【제출내용】)

(【가산료】 ₩)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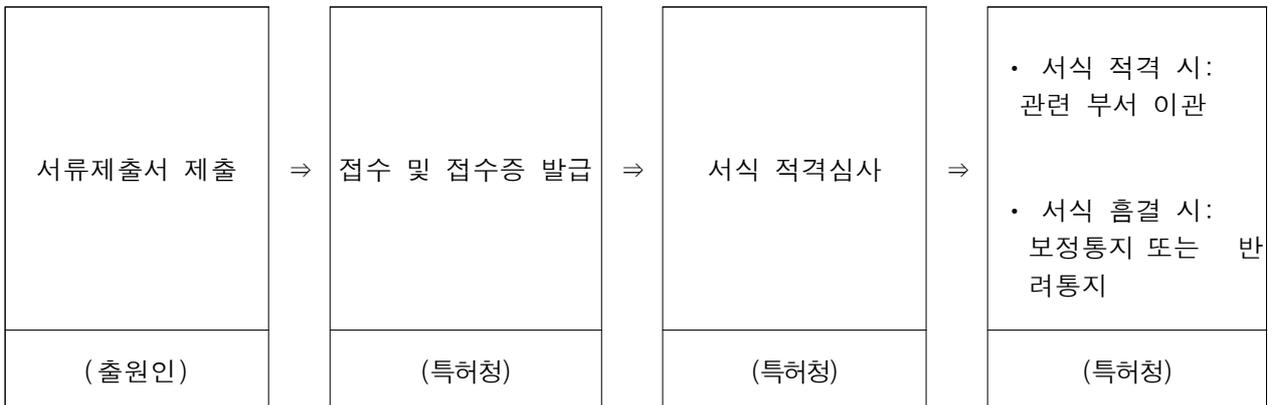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1. 제출구분 및 관련 규정

제출구분	내 용	관련 규정
국제조사용번역문	국제 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4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서류원본	팩스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자가 그 원본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기간 미준수 증거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와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국제출원에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되어 그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제3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도면	국제출원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그 출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제출원에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되어 그 누락된 도면 또는 정정하는 도면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제99조의2제3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선출원번역문	심사관이 제출을 요구한 선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06조의35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열목록 등	표준에 맞는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출명령을 받고 이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제106조의38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열목록보정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부분이 PCT조약규칙 5.2(b)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정을 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3·제106조의38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 PCT/KR2007/123456

2. 【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제출기관】란

서류를 제출하려는 기관을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4. 【출원인】란

가. 【성명(명칭)】 및 【주소】

【성명(명칭)】란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주소를 적으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공동출원인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

5. 【대리인】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성명(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적습니다.

6. 【제출(보정)요구일자】란

제출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제출요구서, 납부요구서 및 보정요구서 등에 적혀 있는 발송일자를 적습니다.

7. 【제출내용】란

가. 서류원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내용】란의 다음 행에 【Fax송부일자】 및 【Fax송부서류명】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제출내용】

【Fax송부일자】

【Fax송부서류명】

나.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내용】란의 다음 행에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란을 만들어 추가 또는 정정할 부분을 명시합니다. 누락된 도면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도면이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당 도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합니다.

[예] 【제출내용】

【누락된 부분】

다. 서열목록 등 또는 서열목록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진술서 및 보정서(프리텍스트) 중에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8. 【가산료】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를 참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9.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0.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조사용번역문 2통(국제조사용번역문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2) Fax송부된 서류원본 3통(서류원본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증거서류 1통(기간 미준수 증거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34)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통(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45) 선출원번역문 1통(선출원번역문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56) 서열목록, 진술서 또는 보정서 1통(서열목록 등 또는 서열목록보정 제출의 경우에 한정한다)

(6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5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작성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서 중 서류원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0.·21.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23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통
2.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신설>

20.·21. (현행과 같음)

22.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출원을 기초로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미생물의 분양절차) -----

----- 증명신청서를 -----
----- .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제29조의2(분리출원) ①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신설>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② (생 략)

1.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